

##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根據一九八二年十二月十日《聯合國海洋法公約》的有關規定，為養護和合理利用共同關心的海洋生物資源，維護海上正常作業秩序，加強和發展漁業領域的相互合作，經友好協商，達成協議如下：

### 第一條

本協定的適用水域(以下稱□協定水域□)為大韓民國的專屬經濟區和中華人民共和國的專屬經濟區。

### 第二條

一、締約各方按照本協定和本國有關法律、法規的規定，准許締約另一方的國民及漁船在本國專屬經濟區從事漁業活動。

二、締約各方授權機關根據本協定附件一及本國有關法律、法規的規定向締約另一方國民及漁船發放入漁許可證。

### 第三條

一、締約各方每年決定締約另一方國民及漁船在本國專屬經濟區的可捕魚種、漁獲配額、作業時間、作業區域及其他作業條件，並通報締約另一方。

二、締約各方決定第一款所規定事項時應考慮到本國專屬經濟區的海洋生物資源狀況、本國捕撈能力、傳統漁業活動、相互入漁狀況及其他有關因素，並應尊重根據第十三條的規定設立的韓中漁業聯合委員會的協商結果。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이 협정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한다.

### 제 2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 3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조업기간·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전통적 어업활동,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第四條

一、締約一方的國民及漁船進入締約另一方專屬經濟區從事漁業活動，應遵守本協定及締約另一方有關法律、法規的規定。

二、締約各方應採取必要措施，確保本國國民及漁船在締約另一方專屬經濟區從事漁業活動時，遵守締約另一方有關法律、法規所規定的海洋生物資源的養護措施及其他條件和本協定的規定。

三、締約各方應及時向締約另一方通報本國有關法律、法規所規定的海洋生物資源的養護措施及其他條件。

#### 第五條

一、締約各方為確保締約另一方的國民及漁船遵守本國有關法律、法規所規定的海洋生物資源的養護措施及其他條件，可根據國際法在本國專屬經濟區採取必要措施。

二、被扣留或逮捕的漁船或船員，在提出適當的保證書或其他擔保之后，應迅速獲得釋放。

三、締約一方在扣留或逮捕締約另一方的漁船或船員時，應通過適當途徑，將所採取的行動及隨後所施加的處罰，迅速通知締約另一方。

#### 第六條

第二條至第五條的規定適用於協定水域中除第七條、第八條和第九條所指水域以外的部分。

#### 第七條

一、下列各點順次用直線連接而圍成的水域(以下稱□暫定措施水域□)適用第二款及第三款的規定。

## 제 4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협정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와 기타조건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되거나 억류된 어선 또는 승무원은 적절한 보증금 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어선 또는 승무원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야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정한 수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7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잠정조치수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1、北緯37度00分，東經123度40分之点(A1)
- 2、北緯36度22分23秒，東經123度10分52秒之点(A2)
- 3、北緯35度30分，東經122度11分54秒之点(A3)
- 4、北緯35度30分，東經122度01分54秒之点(A4)
- 5、北緯34度00分，東經122度01分54秒之点(A5)
- 6、北緯34度00分，東經122度11分54秒之点(A6)
- 7、北緯33度20分，東經122度41分之点(A7)
- 8、北緯32度20分，東經123度45分之点(A8)
- 9、北緯32度11分，東經123度49分30秒之点(A9)
- 10、北緯32度11分，東經125度25分之点(A10)
- 11、北緯33度20分，東經124度08分之点(A11)
- 12、北緯34度00分，東經124度00分30秒之点(A12)
- 13、北緯35度00分，東經124度07分30秒之点(A13)
- 14、北緯35度30分，東經124度30分之点(A14)
- 15、北緯36度45分，東經124度30分之点(A15)
- 16、北緯37度00分，東經124度20分之点(A16)
- 17、北緯37度00分，東經123度40分之点(A17)

二、締約雙方爲養護和合理利用海洋生物資源，應按照根据第十三條的規定設立的韓中漁業聯合委員會的決定，在暫定措施水域采取共同的養護措施和量的管理措施。

三、締約各方在暫定措施水域對從事漁業活動的本國國民及漁船采取管理和其他必要措施，不對締約另一方國民及漁船采取管理和其他措施。締約一方發現締約另一方國民及漁船違反韓中漁業聯合委員會的決定時，可就事實提醒該國民及漁船注意，并將事實及有關情況通報締約另一方。締約另一方應尊重對方的通報，并在采取必要措施后，將結果通報對方。

- 가 북위37도00분, 동경123도40분의 점 (A1)
- 나 북위36도22분23초, 동경123도10분52초의 점 (A2)
- 다 북위35도30분, 동경122도11분54초의 점 (A3)
- 라 북위35도30분, 동경122도01분54초의 점 (A4)
- 마 북위34도00분, 동경122도01분54초의 점 (A5)
- 바 북위34도00분, 동경122도11분54초의 점 (A6)
- 사 북위33도20분, 동경122도41분의 점 (A7)
- 아 북위32도20분, 동경123도45분의 점 (A8)
- 자 북위32도11분, 동경123도49분30초의 점 (A9)
- 차 북위32도11분, 동경125도25분의 점 (A10)
- 카 북위33도20분, 동경124도08분의 점 (A11)
- 타 북위34도00분, 동경124도00분30초의 점 (A12)
- 파 북위35도00분, 동경124도07분30초의 점 (A13)
- 하 북위35도30분, 동경124도30분의 점 (A14)
- 거 북위36도45분, 동경124도30분의 점 (A15)
- 너 북위37도00분, 동경124도20분의 점 (A16)
- 더 북위37도00분, 동경123도40분의 점 (A17)

2.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의 보존조치 및 양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통보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 第八條

一、自本協定生效之日起四年內，下列(一)及(二)各点順次用直線連接而圍成的水域(以下稱□過渡水域□)適用第二款至第四款的規定。

### (一)韓方一側過渡水域坐標

- 1、北緯35度30分，東經124度30分之点(K1)
- 2、北緯35度00分，東經124度07分30秒之点(K2)
- 3、北緯34度00分，東經124度00分30秒之点(K3)
- 4、北緯33度20分，東經124度08分之点(K4)
- 5、北緯32度11分，東經125度25分之点(K5)
- 6、北緯32度11分，東經126度45分之点(K6)
- 7、北緯32度40分，東經127度00分之点(K7)
- 8、北緯32度24分30秒，東經126度17分之点(K8)
- 9、北緯32度29分，東經125度57分30秒之点(K9)
- 10、北緯33度20分，東經125度28分之点(K10)
- 11、北緯34度00分，東經124度35分之点(K11)
- 12、北緯34度25分，東經124度33分之点(K12)
- 13、北緯35度30分，東經124度48分之点(K13)
- 14、北緯35度30分，東經124度30分之点(K14)

### (二)中方一側過渡水域坐標

- 1、北緯35度30分，東經121度55分之点(C1)
- 2、北緯35度00分，東經121度30分之点(C2)
- 3、北緯34度00分，東經121度30分之点(C3)
- 4、北緯33度20分，東經122度00分之点(C4)
- 5、北緯31度50分，東經123度00分之点(C5)
- 6、北緯31度50分，東經124度00分之点(C6)
- 7、北緯32度20分，東經123度45分之点(C7)
- 8、北緯33度20分，東經122度41分之点(C8)
- 9、北緯34度00分，東經122度11分54秒之点(C9)
- 10、北緯34度00分，東經122度01分54秒之点(C10)
- 11、北緯35度30分，東經122度01分54秒之点(C11)
- 12、北緯35度30分，東經121度55分之点(C12)

## 제 8 조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까지 다음 (1) 및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이하 “과도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한국측 과도수역 좌표

가 북위35도30분,	동경124도30분의 점	(K1)
나 북위35도00분,	동경124도07분30초의 점	(K2)
다 북위34도00분,	동경124도00분30초의 점	(K3)
라 북위33도20분,	동경124도08분의 점	(K4)
마 북위32도11분,	동경125도25분의 점	(K5)
바 북위32도11분,	동경126도45분의 점	(K6)
사 북위32도40분,	동경127도00분의 점	(K7)
아 북위32도24분30초,	동경126도17분의 점	(K8)
자 북위32도29분,	동경125도57분30초의 점	(K9)
차 북위33도20분,	동경125도28분의 점	(K10)
카 북위34도00분,	동경124도35분의 점	(K11)
타 북위34도25분,	동경124도33분의 점	(K12)
파 북위35도30분,	동경124도48분의 점	(K13)
하 북위35도30분,	동경124도30분의 점	(K14)

(2). 중국측 과도수역 좌표

가 북위35도30분,	동경121도55분의 점	(C1)
나 북위35도00분,	동경121도30분의 점	(C2)
다 북위34도00분,	동경121도30분의 점	(C3)
라 북위33도20분,	동경122도00분의 점	(C4)
마 북위31도50분,	동경123도00분의 점	(C5)
바 북위31도50분,	동경124도00분의 점	(C6)
사 북위32도20분,	동경123도45분의 점	(C7)
아 북위33도20분,	동경122도41분의 점	(C8)
자 북위34도00분,	동경122도11분54초의 점	(C9)
차 북위34도00분,	동경122도01분54초의 점	(C10)
카 북위35도30분,	동경122도01분54초의 점	(C11)
타 북위35도30분,	동경121도55분의 점	(C12)

二、爲在過渡水域逐步實施專屬經濟區制度，締約各方應採取適當措施，逐步調整并減少在締約另一方一側過渡水域作業的本國國民及漁船的漁業活動，以努力實現平衡。

三、締約雙方在過渡水域應採取與第七條第二款和第三款相同的養護和管理措施，還可採取聯合監督檢查措施，包括聯合乘船、勒令停船、登臨檢查等。

四、締約雙方各自對在締約另一方一側過渡水域作業的本國漁船發放許可證，并相互交換漁船名冊。

五、本協定生效之日起四年后，過渡水域適用第二條至第五條的規定。

### 第九條

締約雙方在第七條第一款規定的暫定措施水域北限線所處緯度線以北的部分水域及第七條第一款規定的暫定措施水域和第八條第一款規定的過渡水域以南的部分水域，維持現有漁業活動，不將本國有關漁業的法律、法規適用於締約另一方的國民及漁船，除非締約雙方另有協議。

### 第十條

締約各方爲確保航行和作業安全，維護海上正常作業秩序并順利及時處理海上事故，應對本國國民及漁船採取指導及其他必要措施。

### 第十一條

一、締約一方的國民及漁船在締約另一方沿岸遭遇海難或其他緊急事態時，締約另一方應盡力予以救助和保護，同時迅速將有關情況通報對方的有關部門。

2. 각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당사자는 과도수역에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공동승선·정선·승선검색 등을 포함한 공동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타방체약당사자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한 그 어선의 명부를 상호 교환한다.

5.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과도수역에 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9 조

양 체약당사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복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각 체약당사자는 항행 및 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해상사고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1 조

1.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연안에서 해난이나 기타 긴급사태를 당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구조 및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상황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二、締約一方的國民及漁船，由于天氣惡劣或其他緊急事態需要避難時，可按本協定附件二的規定，與締約另一方有關部門聯系，到締約另一方港口等處避難。該國民及漁船應遵守締約另一方的有關法律、法規，并服從有關部門的指揮。

## 第十二條

締約雙方爲開展養護和合理利用海洋生物資源的科學研究(包括交換必要資料)，應加強合作。

## 第十三條

一、締約雙方爲便于實施本協定，設立韓中漁業聯合委員會(以下稱□漁委會□)。漁委會由締約雙方各自任命的一名代表和若干名委員組成，必要時可設立專家組。

二、漁委會的任務如下：

(一)協商如下事項，并締約雙方政府提出建議：

1、第三條規定的締約另一方國民及漁船的可捕魚種、漁獲配額及其他具體作業條件的事項；

2、有關維持作業秩序的事項；

3、有關海洋生物資源狀況和養護的事項；

4、有關兩國間漁業合作的事項。

(二)根據需要，可就本協定附件的修改向締約雙方政府提出建議。

(三)協商和決定與第七條、第八條規定有關的事項。

(四)研究本協定的執行情況及其他有關本協定的事項。

三、漁委會的一切建議和決定須經雙方代表一致同意。

四、締約雙方政府應尊重第二款第(一)項的建議，并按照第二款第(三)項的決定採取必要措施。

五、漁委會每年召開一次會議，在大韓民國和中華人民共和國輪流舉行。根據需要，經締約雙方同意可召開臨時會議。

2.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은 악천후 또는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의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구 등에 피난할 수 있다. 해당 국민 및 어선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관계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 12 조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과학적 연구(필요한 자료교환을 포함)를 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 13 조

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아래 사항을 협의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게 허용하는 어획가능어종·어획할당량 및 기타 구체적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집행현황과 기타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권고와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만 이를 한다.

4. 양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제2항(1)의 권고를 존중하고, 제2항(3)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第十四條

本協定各項規定不得認爲有損締約雙方各自關於海洋法諸問題的立場。

#### 第十五條

本協定的附件爲本協定不可分割的組成部分。

#### 第十六條

一、本協定經締約雙方履行各自國內法律程序后，自換文通知之日起生效。

二、本協定有效期爲五年，之后有效至根据第三款的規定終止爲止。

三、締約任何一方在最初五年期滿時或在其后，可提前一年以書面形式通知締約另一方，隨時終止本協定。

以下經各自政府授權的代表在本協定上簽字，以昭信守。

本協定于二000年八月三日在北京簽訂，一式兩份，每份都用韓文和中文寫成，兩種文本同等作准。

大韓民國政府代表

中華人民共和國政府代表

## 제 14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계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15 조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 16 조

1. 이 협정은 양 계약당사자가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

3. 일방계약당사자는 타방계약당사자에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5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 년 월 일 에서 서명하였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附件一：

締約各方根据本協定第二條第二款的規定，采取以下入漁許可措施：

一、締約各方授權機關在接到締約另一方授權機關發來的本協定第三條規定的決定的書面通報后，向締約另一方授權機關申請發給希望在締約另一方專屬經濟區從事漁業活動的本國國民及漁船入漁許可證。締約另一方授權機關按照本協定及本國有關法律、法規的規定頒發許可證。締約各方授權機關發放許可證時可收取適當費用。

二、締約各方授權機關應以書面形式向締約另一方授權機關通報有關入漁的手續規定(包括許可證的申請和頒發、漁獲量統計資料的提供、漁船標識及捕撈日志的填寫等)。

三、獲得許可的漁船應將許可證置于駕駛艙明顯之處，并明確顯示締約另一方規定的漁船標識。

## 부속서 I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허가에 관한 아래 조치를 취한다.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 제3조에 정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타방 체약당사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발급에 있어 적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에 관한 절차규정(허가증의 신청과 발급, 어획량에 관한 통계자료제출,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 등)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규정한 어선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附件二

本協定第十一條第二款的規定按以下規定實施：

一、大韓民國政府指定的聯絡部門爲海洋警察部門。中華人民共和國政府指定的聯絡部門爲管轄有關港口的港務監督部門。

二、具體聯系方法在根据本協定第十三條的規定設立的韓中漁業聯合委員會上相互通報。

三、締約各方的漁船與締約另一方指定的聯絡部門進行聯系的內容有：船名、呼號、當時船位(緯度、經度)、船籍港、總噸位、全長、船長姓名、船員數、避難理由、請求避難的目的地、預計到達時間和通訊聯絡方法。

## 부속서 II

이 협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아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연락처는 관련 항구를 관할하는 항구감독기관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연락방법에 대하여는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보한다.
3. 각 계약당사자의 어선이 타방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연락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명·호출신호·현재위치(위도·경도)·선적항·총톤수·전장·선장의 성명·선원수·피난이유·  
피난요청목적지·도착예정시각 및 통신연락방법